

고 창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제700호 2024. 1. 26.(금)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조 례】

- 고창군 조례 제2770호 고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고창군 조례 제2771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공 고】

- 고창군 공고 제2024-84호 고창군 수리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 고창군 공고 제2024-85호 공인의 폐기 공고 14
- 고창군 공고 제2024-86호 2024년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모집공고 17
- 고창군 공고 제2024-91호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3
- 고창군 공고 제2024-93호 2024년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사업 모집공고 32
- 고창군 공고 제2024-94호 양식장 친환경에너지(히트펌프) 보급사업 모집공고 38
- 고창군 공고 제2024-95호 2024년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모집공고 49
- 고창군 공고 제2024-99호 2024년 내수면양식장 소독제·기자재 지원사업 모집공고 53

회 람									
--------	--	--	--	--	--	--	--	--	--

발행 고 창 군(편집 행정지원과 ☎ 063-560-2326)

【공 고】

- 고창군 공고 제2024-100호 2024년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63
- 고창군 공고 제2024-113호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68
- 고창군 공고 제2024-122호 2024년 수산부산물 처리지원 시범사업 모집 공고 70
- 고창군 공고 제2024-125호 2024년 진암 장학재단 장학생 추천 공고 75
- 고창군 공고 제2024-159호 2024년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모집 공고 82
- 고창군 공고 제2024-170호 코리아들레길(서해랑길) 쉼터 및 지역관광 자원연계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공고 87

【회 보】

- 2020 종합민원실 신축신고-109 (2024.1.15.) (고창읍 김기태, 박희경)도로지정 98
- 2023 종합민원실 증축신고-85 (2024.1.16.) (고수면 조성아)도로지정 100
- 2023 종합민원실 신축허가-9 (2024.1.19.) (고창읍 이익재)도로지정 102
- 2023 종합민원실 신축신고-160 (2024.1.23.) (신림면 장흥고씨두모치중중)도로지정 104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4년 1월 26일

고창군 조례 제 2770 호

고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

고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희망복지팀장”을 “기초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하고, 같은 조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희망복지팀장으로 한다. ② (생략)</p>	<p>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 ----- 기초생활보장팀장----- -. 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 <u>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p>	<p>제8조(존속기한) ----- --- <u>2028년 12월 31일</u>----- -. <단서 삭제></p>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4년 1월 26일

고창군 조례 제 2771 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사망 시 배우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의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고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 3. (생략)</p> <p>4. 법 제4조제1항제6호 <u>공상군경</u>, 제8호 보국수훈자</p> <p>5. ~ 7. (생략)</p> <p>②·③ (생략)</p>	<p>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공상군경</u> <u>(사망 시 배우자)</u>-----</p> <p>5. ~ 7.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고창군 공고 제2024-84호

고창군 수리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 수리계 관리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고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4. 1. 18.)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변경사항을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정비

당초	변경	비고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3. 의견제출

고창군 수리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 : 건설도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 56428,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전화 : 063-560-2542 FAX : 063-560-2579)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 담당자 민병운
(전화:063-560-25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수리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고창군 수리계관리 조례」의 개정) 고창군 수리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로 한다.

부칙 제3조 중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로 한다.

제2조(「고창군 계획 조례」의 개정)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으로 한다.

제66조제2호 중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를 “전북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3조(「고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고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하단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고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고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고창군 수리계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p>부칙</p> <p>제2조(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u>전라북도 농지개량계관리조례</u>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p> <p>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u>전라북도 농지개량계관리조례</u>에 의하여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p> <p>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u>전라북도 농지개량계관리조례</u>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u>전라북도 농지개량계관리조례</u>에 의하여 <u>재임한</u>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p>	<p>부칙</p> <p>제2조(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 <u>전북특별자치도 농지개량계관리조례</u>----- ----- -----.</p> <p>② ----- <u>전북특별자치도 농지개량계관리조례</u>----- ----- -----.</p> <p>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 ----- <u>전북특별자치도 농지개량계관리조례</u>----- ----- ----- <u>전북특별자치도 농지개량계관리조례</u>----- -----.</p>

2. 고창군 계획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u>전라북도</u>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 ----- ----- <u>전북특별자치도</u> ----- -----.
제66조(기능) 군 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u>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u> 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4. (생략)	제66조(기능) ----- -----. 1. (현행과 같음) 2. <u>전북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u> ----- ----- 3.·4. (현행과 같음)

3. 고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② (생략) 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 <u>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u> 」 제5조제1항에 따른 <u>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u> 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u> 」 제5조제1항에 따른 <u>전북특별자치도</u> ----- -----.

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

4.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경우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해 도지사와의 협의 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여 통합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 <u>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u> 」(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조례”라 한다)를 우선하여 따라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u>전북특별자치도</u> ----- ----- ----- -----.

5. 고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 <u>전</u>	제1조(목적) ----- ----- <u>전북특별</u>

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한 사항
2. (생략)
- ② (생략)

자치도 -----

-----.

제3조(보조금 지원) ① -----

-----.

1. 전북특별자치도 -----

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고창군 수리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고창군 수리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 하

고창군 공고 제2024 - 85호**공인의 폐기 공고**

고창군 공인조례 제9조(공인의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규정에 의거 폐기 공인을 동 조례 제8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고 창 군 수

1. 공인의 폐기 사유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전북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 특별법, 2024. 1. 18. 시행)
2. 폐 기 일 : 2024. 1. 22.(공고 후)
3. 공고기간 : 2024. 1. 15. ~ 2024. 1. 21. [7일간]
4. 공인명 및 인영 : 아래 별첨

공인 폐기 내역

구 분	공 인 명	인 영	규 격(cm)	재 질	비 고
폐 기	전라북도지사 의인고창군수 전 용		2.7×2.7	벽조목	전북특별자치도설치등 에관한특별법 시행

※ 기타 문의사항은 고창군 행정지원과 행정팀 주무관 노대진(063-560-23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인 대 장

관인 명칭	전라북도지사의인고창군수전용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관인	관리부서	울력행정과
<input type="checkbox"/> 등 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등록		등록일(재등록일)	2019년 10월 30일
		새긴 날짜	2019년 08월 30일
		새긴 사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33 성명 및 상호: 장운식, 캘리존 생년월일: 691103-*****
		최초 사용일	2019년 11월 06일
		재 료	벽조목
		등록(재등록)사유	서체 변경에 따른 개각(판소리체)
		군보 공고	2019년 10월 30일 공고 제 2019 - 1442호
		비 고	
		폐 기	등록일(재등록일)
폐기일(분실일)	년 월 일		
폐기 사유	<input type="checkbox"/> 마멸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폐기 방법	<input type="checkbox"/> 이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군보 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고			

고창군 공고 제 2024- 86호

2024년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모집공고

「2024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사업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2024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 나. 사업비 : 36,666천원 (국비 11,000 도비 11,000 자담 14,666)
- 다. 사업량

(단위 : 척, 천원)

구분	사업량	계	국비(30%)	도비(30%)	자담(40%)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	1	36,666	11,000	11,000	14,666

※ 500마력 이상으로 기관 대체 시 국비20%, 도비30%, 자부담50% 적용

라. 사업내용 :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지원

마. 근거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어업선진화 사업의 추진) 및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2. 사업대상자

-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고창군 어업인
- ※ 연근해어업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3. 지원품목

- 가. 고효율 등(燈)(LED)
- 나.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다. 그 외 에너지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등

4. 우선순위 및 제외 대상

가. 우선순위

- 사업자 선정은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허가어선 운영실적(해당 어선 운영 연수에 따라 배점), 조업 실적(조업일수에 따라 배점), 어선 검사 이수 여부, 어업인 후계자 여부 등을 따져 결정

< 우선순위 >

가. 1순위 : 고효율등(燈) 및 유류절감장치

나. 2순위 :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

- (디젤기관) ①전자식 엔진 교체자, ②노후화 순으로 선정
- (가솔린기관) 노후화 순으로 선정

※ 유의사항(공통) : 기관 교체 시 상위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될 경우에는 허용범위 10%이하로 상위마력

* (예시) 316마력 단종시 320마력 기관 설치(기존 마력과의 허용마력 내 최소치 적용)

나. 지원제외 대상

- 1)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2)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선정 취소 이후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어선사고, 재난 등으로 인해 해당 어선이 파손되거나 침몰·유실로 소실되어 사업취소 또는 포기 시 예외적 허용 가능
- 2)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3)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감척대상 어선
- 4)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 또는 어선(지원받은 기관, 장비 등의 내용연수 안에 동일한 품목 중복지원 불가)
 - * 기 지원받은 기관·장비·설비는 내용연수 안에 중복지원이 불가
- 5) 가족(부부 등)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하는 자
- 6) 사업자로 선정 승인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자
 - * 어선사고, 재난 등으로 인해 해당 어선이 파손되거나 침몰·유실로 소실되어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판단하여 예외적 허용 가능
- 7) 2023년 조업일수 60일 미만인 자

5. 사업자 선정 및 집행 절차

- 가. 사업 신청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 선정
- 나. 사업자 선정 완료 후 사업자 명단, 지원금액 등 공동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역 수협 조합장에게 통보
- 다. 사업자는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를 해당 지역별 수협 조합장에게 신청하여 해당 어선에 설치

6. 사업자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지원한도액은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 구매가액(설치비 포함 한다)의 보조지원율로 지원
- 나. 사업자는 수협중앙회의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 체결 제품 구입을 원칙으로 함
→ 신청 전 붙임2(엑셀) 2024년도 어업용 기자재 계약단가 물품 확인하여 기관 및 장비의 업체명·모델명·금액·설치 가능 여부 파악하여 신청
- 다. 사업자 선정 후 지원품목 변경 불가
- 라. 보조금으로 취득·설치한 기관·장비·설비는 내용연수(사후관리기간)까지 관리함

분류	내용연수(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고가 동산(공통) (5천만원 이상)	기계류 등(15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디젤엔진, 가솔린엔진	조달청 내용연수 (디젤엔진 10년, 가솔린선외모터 7년, 가솔린엔진 11년)	
그 외 유류절감장치	조달청 내용연수 * 조달청 내용연수에 미해당될 경우 해수부 내용연수로 관리	

- 마.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바. 내용연수가 5년 미만의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해당 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을 봄

7. 신청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4. 01. 15. ~ 01. 26. (12일간)
- 다. 접수방법 :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직접 방문 접수(고창읍 중앙로 245)

나.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선적증서 사본 1부
-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1부
- 엔진 사진(시리얼넘버, 제조사, 제작 연도 확인, 必) 1부
- 엔진 설치 기간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서류 1부

8. 기타사항

가. 사업신청자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신청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560-26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01.

고 창 군 수

【별지 제1호서식】 사업신청서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신청서

신청자 정보	성명 (대표자명)		생년 월일	0000.00.00	연락처	()	
	주소						
	어선번호	어업종류	<input type="checkbox"/> 연안 <input type="checkbox"/> 근해	업종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명으로 작성		
		어선명		총톤수			
어선번호			허가·면허 번호 (발급기관)				
신청내용	신청품목		제품명(모델명)				
	기존 마력 *기관신청 시 작성		신청 마력				
	노후정도	(예시) 10년 3개월	엔진 형태 *디젤기관만 해당	<input type="checkbox"/> 전자식 <input type="checkbox"/> 기계식			
	사업비 (신청품목 가격)	(예시) 20,000,000원	신청 개수	개	* 집어등의 경우만 해당		
마력 변경 사유 *해당사항 있을 경우 작성		(예시) 기존 마력 단종으로 316마력에서 320마력으로 상향 신청					
<p>○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p> <p>○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신청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고창군수 귀하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 선적증서 사본 1부 3. 어업허가증 사본 1부 4.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5.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1부 6. 엔진 사진(시리얼넘버, 제조사, 제작 연도, 설치 연도 必)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의 대상자 적합 여부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대상자 적합여부 판단	
수집·이용할 항목	<p>[필수적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기타 사업자 선정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상담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p>[선택적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 외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p>※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p>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해양수산부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기간 동안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적합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선택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해양수산부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 및 성과평가와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등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제공 - 해양수산부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 처리에 활용하거나, 공공기관 등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등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제공되는 개인 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및 사업 이용신청서 항목 	
제공받은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서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보급 사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고창군 공고 제2024-91호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고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4. 1. 18.)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2021. 1. 12.)에 따라 정당 현수막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변경 사항(안제1조, 2조, 6조, 19조)
- 정당 현수막 관련 변경 사항 (안제3조의2)

3. 의견제출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 : 건설도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 56428,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전화 : 063-560-2542 FAX : 063-560-2579)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 담당자 민병운 (전화:063-560-25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전북자치도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영 제3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2.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영으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한 자는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③ 군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읍·면별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지정게시대에 고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제외한다.

④ 현수막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과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이 없어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같은 조제2항제1호 및 제2 중 “**도**”를 각각 “**전북자치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도**”를 “**전북자치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u>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u>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전북특별자치도</u> ----- ----- -----.</p>
<p>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u>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u>」(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간판</p> <p>3. (생략)</p>	<p>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u>」(이하 “전북자치도 ----- ----- -----</p> <p>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3조의2(정당현수막) <u>정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u></p> <p>1. <u>군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계시대에 고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제외한다.</u></p> <p>2. <u>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른 선거구안의 읍·면 수의 2배 이내 이어야 한다. 단, 고창읍은 5배 이내로 한다.</u></p> <p>3. <u>현수막은 「옥외광고물등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과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이 없어야 한다.</u></p>	<p>제3조의2(정당현수막) ① <u>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라한다) 제8조 및 영 제3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u></p> <p>1. <u>읍·면(「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u></p> <p>2. <u>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u></p> <p>3. <u>영으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을 준수할 것</u></p> <p>② <u>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한 자는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u></p> <p>③ <u>군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읍·면별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지정계시대에 고정</u></p>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② (생략)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6조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제외한다.

- ④ 현수막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 광고물 등과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이 없어야 한다.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 법 -----

② (현행과 같음)

1. ----- 전북자치도 -----

<p>가. 나. (생략)</p> <p>2. 영 제20조에 따른 <u>도 조례 제16조</u>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항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p> <p>3. (생략)</p>	<p>가. 나. (현행과 같음),</p> <p>2. ----- <u>전북자치도</u> ----- ----- ----- ----- -----.</p> <p>3. (현행과 같음)</p>
<p>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u>도 조례 제12조제3항</u>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p> <p>② ~ ⑦ (생략)</p>	<p>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 <u>전북자치도</u> ----- ----- ----- ----- ----- -----.</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고창군 공고 제 2024 - 93 호

2024년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사업 모집공고

수산생물질병의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2024년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총사업비				
		계	국비(30%)	도비(15%)	군비(35%)	자담(20%)
내수면	폐사체 처리기	230,000	69,000	34,500	80,500	46,000

【 세부 지원내용 】

: 기계·장비·소독시설의 구입·설치, 설계비, 공사감리비, 건물 신·증축 비용, 폐사체 처리를 위한 보관장비, 수거장치, 수거차량 등 부대시설 및 장비 구입비용, 악취저감시설·폐수처리시설 등 환경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 일체

(* 열처리 시설 반드시 포함 / 폐사체 처리시설에 포함된 보관장비, 수거차량 등 비용지원 인정, 부지 매입 및 운영비 제외)

2. 근거법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3조(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제17조(사체의 처분제한 등), 제38조(방역교육) 및 제43조(비용의 지원 등)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보조 등)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수산관계법령에 의해 면허·허가·신고필한 어업인 및 단체(영어조합법인 등) 이면서 양식 어장을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자
 - 방역교육을 이수한 자

- 재달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자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자
-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어업경영체 등록한 자

□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의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4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이내)는 2024년 사업대상자 선정시 사업지원 제한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

4.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우선순위

□ 평가항목

- 수산보조사업의 수혜 여부, 어업기반, 판매실적, 어업경영실적(출하신고내역, 사료구입영수증, 세무신고내역 등)

□ 우선순위

- 1순위 양식어업인, 2순위 수협·영어조합법인·어촌계, 3순위 수산질병관리원·수산생물방역 전문 법인 등
- HACCP 등록 양식장

5. 사업자 선정 및 집행절차

- 사업 신청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군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사업자 선정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한도액 설정 및 사업 완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내년도 사업추진 시 반영할 계획

6. 신청서 접수기간 : 2024. 1. 16.(화) ~ 2024. 1. 31.(수) (16일간)

7.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및 회의록(어촌계 또는 법인 신청 시에 한함) 1부
- 최근 2년간(2022~2023) 어업경영실적을 입증할 증빙자료
 - 출하신고내역, 사료구입영수증, 양식물 구입 및 판매실적(세무신고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및 업체 거래증빙 통장내역 등)
- HACCP 등록 양식장의 경우 등록증 1부 (해당시)
- 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1부 (해당시)

8. 접수처 : 고창군 해양수산물 수산진흥담당(☎ 063.560.2643)

9. 본사업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해양수산물 수산진흥 담당에 문의하시고,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24. 1. .

고 창 군 수

2024년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단 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회원수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사업			
	사업계획				
	사 업 비 (천원)	계	국비 (30%)	도비 (15%)	군비 (35%)
<p>위와 같이 2024년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고창군수 귀하</p>					

○ 개인정보제공 동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1.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1항(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제공 동의
- 2. 사용목적 :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사업 추진 목적으로만 제공
- 3. 정보 제공 범위 : 사업추진에 이용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필요한 정보
- 4. 정보 열람 범위 : 본인, 업무 관련자
- 5. 정보 등록 주체 : 본인, 업무 관련자
- 6. 정보주체의 권리 : 사업 추진시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제공동의를 한 경우에만 수집되므로 동의 없이 제공된 경우에는 삭제 요청할 수 있다.
- 7. 보유 및 사용기간 : 개인정보제공 동의한 날로부터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기간까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사업 추진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개인 정보 취급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1항(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을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 서식4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024년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사업

2. 사업지원 필요성

○

3.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수산업법,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추진기간 : 2024년 1월 ~ 12월 일
- 장 소 : 고창군 일원
- 참여대상.인원 : 명
- 사 업 량 :

4. 세부추진계획

구 분	사업내용	법적근거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비 고

※ 사업추진상 구분은 기본계획 입안 보조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사업정산 등으로 단계적.추진순서대로 구분 기재

5. 기대효과

- 1) 사회적 기여도
-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고창군 공고 제 2024 - 94 호

양식장 친환경에너지(히트펌프) 보급사업 모집공고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고 에너지 이용 비용 절감을 통해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4년 양식장 친환경에너지(히트펌프) 보급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업량	총사업비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담
해수열 히트펌프 1,303kW	1,107,769	664,662	66,466	155,088	22,1553

【 세부 지원내용 】

: 시설용량(kW) × 지원한도(850천원/kW)

【 보조금 지원한도 】

: 단위별 최소 지원사업비 120백만원

【 사업시행기관 】

: 고창군수(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2.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제9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조정) 및 제10조(구성된 사업비의 사용)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및 제14조 (금융·세제상의 지원)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수산관계법령에 의해 면허·허가·신고를 필한 어업인 및 단체(영어조합법인 등) 이면서 양식 어장을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자

□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의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한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의 면허, 허가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에 신청한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여부가 보험사기에 관련된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는 선정 제외

4.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우선순위

□ 평가항목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사업자 선정 시 사업대상 양식장의 환수량에 맞는 적정설비가 당해연도에 모두 설치되도록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자를 선정
- 시설부지 등을 임차한 어업인의 경우 임차 잔여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되, 관련법에 따라 임차 잔여기간(사용허가)이 5년 이하로 정하여 있는 경우도

사업지원 대상자에 포함

(단,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여야 함)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대체 사업자 선정
- 사업추진 제한지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5년) 연수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

□ 우선순위

- 전년도에 지원자금의 한계로 적정시설 규모다 작게 지원된 경우는 가용 예산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자를 우선순위로 지원
- 전력량계 설치 및 에너지 사용량 증빙자료 제공 등 양식장 에너지 소비실태 조사 참여에 협조하는 사업자를 우선순위로 지원
- 전년도 신청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로 당해연도 재신청 사업자를 2순위로 지원
-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때문에 적정설비의 일부만 설치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후순위로 지원

【 경합 시 우선순위 】

1. 정부연구사업 참여업체(현장시험 등) 지원
 2.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를 100% 사용하는 자
 3. 양식장 HACCP 등록양식장
 4.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은 자
 5.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자
 6. 유류사용 또는 환수량이 많은 양식시설
 7. 태풍 등 재해를 입은 어가
- * 동일순위자간 우선순위는 허가된 수면적이 적은 자

5. 대상시설 요건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대상시설 요건

-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필요면적(기계실 부지 등)을 사업 착수 전까지 미확보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설치 시 기존 가온 또는 냉각 시설을 반드시 존치하여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m³/일 이상 또는 수면적 300m² 이상인 시설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사항

- 양식장 신축 또는 증축 등 사업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확장을 고려한 지원 가능

* 사업계획서에 설계도면 및 시공사의 계약서와 인허가승인서류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히트펌프 가동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 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 냉각 연계 설비, 전기설비, 전기 용량 증설 (한전 용량 공사비 포함, 한전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함

* 열원설비의 주요구성(히트펌프, 열교환기, 전원설비 및 주 배관 설비)를 제외한 부대설비(기계실, 축열 및 폐열조, 여과설비)는 전체공사비의 30% 이하로 지원 가능

* 보급되는 장비 및 구조물의 용량은 열원설비(히트펌프)의 용량에 부합하여야 한다.

6. 사업자 선정 및 집행절차

□ 사업 신청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수산조정위원회 공개심의를 통해 사업자 선정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한도액 설정 및 사업 완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내년도 사업추진 시 반영할 계획

7. 신청서 접수기간 : 2024. 1. 16.(화) ~ 2024. 1. 31.(수) (16일간)

8. 신청시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별지 제4호 및 별첨 서식],
세부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 신청절차 : 한국농어촌공사, 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의 검토를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에 제출

※ 사업신청서 작성 시 가온 또는 냉각 부하를 산출,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9. 접수처 :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063.560.2643)

**10. 본사업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
흥담당에 문의하시고,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24. 1. .

고 창 군 수

<첨부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협약서 1부[별지 제8호서식]

<공통사항>

1.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2.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3.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4.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어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5. 지하수를 열원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허가)서류 제출
6.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사본) 1부.
7. 어업면허(허가)가 공동면허 일 경우 신청자 이외 공유자의 동의서(별지 15호) 첨부 제출 1부.
8.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개인, 법인) 1부.
9.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별첨).
10. 의무자조금 품목(김, 전복, 광어, 민물장어, 송어, 향어, 메기, 관상어) 생산어가의 경우 자조금 완납확인서(자조금 단체에서 발행) 1부.

[별지 제6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히트펌프)

1. 사업신청자 현황

가. 전체 보유시설 현황

기존 보유시설(형식/규모)					가온면적				경력	전기시설		
계	비닐 (부직포)	철근콘 크리트	패널 구조	기타	계	유류 보일러	전기 보일러	기타		현재 용량	한전 인입 거리	비상 발전기
m ²				년	kW	m	kW					

나. 사업예정시설 현황

사업예정시설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기타시설장비	비 고
시설형태	면 적	기존/신규	생산시설	외피복재	내피복재		
	m ²						

2. 사업계획

가. 시스템 설치

시스템 선택					
계	지열에너지 설비			수열에너지 설비	
	수 직 밀폐형	수 평 밀폐형	수 직 개방형(SCW)	해수열 히트펌프	공기열 히트펌프
면적	m ²	m ²	m ²	m ²	m ²
용량	kW	kW	kW	kW	kW

○ 시스템 설치 계획

- 구체적인 사업신청 사유

ex) 부화, 먹이배양, 착저기 등 양식 시기별 환수량 감소, 썰물 취수 불능으로 가동불능 등

- 히트펌프 등의 운영 계획

나. 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물	면적(마릿수)	생산 시기 및 과정				생육적정온도
		OO 과정	OO과정	OO 과정	OO과정	
계	m(마리)	월 순				°C

다. 연차별 생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수출품목	생산면적	연 차 별 수 출 목 표						수출국
		2021		2022		2023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m ²	톤	백만원					

라. 자원 조달계획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백만원				-

마.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절감 효과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5. 종합 검토 의견(고창군 작성)

첨부서류 :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별 사진 (2매 이상) 1부.

고창군 공고 제 2024 - 95 호

2024년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모집공고

고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4년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현황

구분	사업량	총사업비		
		계	국비(80%)	자담(20%)
해면 / 내면	고수온 대응장비	12,320	9,856	2,464

【 세부 지원내용 】

: 액화산소공급기, 액화산소, 산소발생기(발생기), 면역증강제, 차광막, 지붕단열제, 저층해수공급장치, 얼음 및 냉각기 등

【 보조금 지원한도 】

: 개소당 최소 3,000천원 이상 최대 5,000천원 이하(자담 포함)

2. 근거법령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보조 등),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수산관계법령에 의해 면허·허가·신고를 필한 어업인 및 단체(영어조합법인 등) 이면서 양식 어장을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자

⇒ 고수온 영향이 적은 육상수조양식장, 뱀장어 양식장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의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4.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우선순위

□ 평가항목

- 수산보조사업의 수혜 여부, 어업기반, 판매실적, 어업경영실적(출하신고내역, 사료구입영수증, 세무신고 내역 등)

□ 우선순위

- 양식재해보험 가입자 중 이상수온(고·저수온) 특약 가입자(사업 신청 당시 유효한 보험증권 사본 소지자) 우선 선정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받은 제품 사용 시 우선 선정

5. 사업자 선정 및 집행절차

- 사업 신청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군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사업자 선정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한도액 설정 및 사업 완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내년도 사업추진 시 반영할 계획

6. 신청서 접수기간 : 2024. 1. 16.(화) ~ 2024. 1. 31.(수) (16일간)

7.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및 회의록(어촌계 또는 법인 신청 시에 한함) 1부
- 최근 2년간(2022~2023) 어업경영실적을 입증할 증빙자료
 - 출하신고 내역, 사료구입영수증, 양식물 구입 및 판매실적(세무신고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및 업체 거래증빙 통장내역 등)
- 이상수온(고·저수온) 특약 가입자 유효한 보험증권 사본 1부 (해당시)
- 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1부 (해당시)

8. 접수처 :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063.560.2643)

9. 본사업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 담당에 문의하시고,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24. 1. .

고 창 군 수

2024년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사업 신청서

관 공 고 번호	제2024-		
단체현황	사업자 (단체)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핸드폰)		
사 업 명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고창군청 관련부서	해양수산과
사업계획 개 요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80%)
		자부담	천원(20%)
<p>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1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자 (직인)</p> <p>고창군수 귀하</p>			

고창군 공고 제 2024 - 99 호

2024년 내수면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모집공고

양식장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2024년 내수면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총사업비			
		계	도비(24%)	군비(56%)	자담(20%)
내수면	양식장 소독제	25,900	6,216	14,504	5,180

【 세부 지원내용 】

: 소독제, 수질정화제, 황토, 소금, 패각 패류제 등

【 보조금 지원한도 및 제한 】

- 톤당 자부담 포함 2,500천원 이내 (초과 금액분은 사업자 부담)
- 해수면과 내수면 양식장을 모두 가진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내수면 소독제 지원사업 신청자는 내수면 기자재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2. 근거법령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보조 등)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8조(양식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소득증대 등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수산관계법령에 의해 면허·허가·신고를 필한 어업인 및 단체(영어조합법인 등) 이면서 양식 어장을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자

□ 제외대상

- MG 등 사용금지 물질을 위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을 양식하다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적발일로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을 제한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

4. 사업자 선정 평가·가점 항목 및 우선순위

□ 평가항목

- 수산보조사업의 수혜 여부, 어업기반, 판매실적, 어업경영실적(출하신고내역, 사료구입영수증, 세무신고내역 등)

□ 가점항목

-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록 어가
- 수산관련 교육과정 이수자(군산대학교, 농식품인력개발원)

□ 우선순위(경협 시)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안전한 양식장으로 인증한 양식장
- '24. 1. 1. 이후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 어가
(NDMS 시스템 상 '확인관 확정' 및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어가
- 당해연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어가
- 전년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어가

5. 사업자 선정 및 집행절차

- 사업 신청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군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사업자 선정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한도액 설정 및 사업 완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내년도 사업추진 시 반영할 계획

6. 신청서 접수기간 : 2024. 1. 16.(화) ~ 2024. 1. 31.(수) (16일간)**7.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및 회의록(어촌계 또는 법인 신청 시에 한함) 1부
- 최근 2년간(2022~2023) 어업경영실적을 입증할 증빙자료
 - 출하신고내역, 사료구입영수증, 양식물 구입 및 판매실적(세무신고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및 업체 거래증빙 통장내역 등)
- 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1부 (해당시)

8. 접수처 : 고창군 해양수산물 수산진흥담당(☎ 063.560.2643)**9. 본사업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해양수산물 수산진흥 담당에 문의하시고,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24. 1. .

고 창 군 수

2024년 내수면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제2023- 호		
신청자 현황	사업자 (단체)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핸드폰)		
양식장 허가번호 및 주소	○ 내수면 허가 제 - 호 ○ 양식장 주소 :	수면적	m ²
사업계획 개 요	○ 양식품종 : ○ 구입품목 : ○ 추진계획 :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80%)
		자부담	천원(20%)
<p>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자 (직인)</p> <p>고창군수 귀하</p>			

○ 개인정보제공 동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1.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1항(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제공 동의
- 2. 사용목적 : 2024년 내수면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추진 목적으로만 제공
- 3. 정보 제공 범위 : 사업추진에 이용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필요한 정보
- 4. 정보 열람 범위 : 본인, 업무 관련자
- 5. 정보 등록 주체 : 본인, 업무 관련자
- 6. 정보주체의 권리 : 사업 추진시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제공동의를 한 경우에만 수집되므로 동의 없이 제공된 경우에는 삭제 요청할 수 있다.
- 7. 보유 및 사용기간 : 개인정보제공 동의한 날로부터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기간까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내수면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추진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개인 정보 취급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1항(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을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2024년 내수면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 모집공고

양식기자재 지원을 통해 양식수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2024년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희망자를 모집 하오니,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총사업비			
		계	도비	군비	자담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30,000	5,400	12,600	12,000

【 세부 지원내용 】

: 수차, 펌프, 수중모터, 바닥덮개, 조류피해 방지망 등

【 보조금 지원한도 및 제한 】

- 톤당 자부담 포함 5,000천원 이내 (초과 금액분은 사업자 부담)
- 해수면과 내수면 양식장을 모두 가진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내수면 소독제 지원사업 신청자는 내수면 기자재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2. 근거법령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8조(양식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소득증대 등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수산관계법령에 의해 면허·허가·신고필한 어업인 및 단체(영어조합법인 등) 이면서 양식 어장을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자

□ 제외대상

- MG 등 사용금지 물질을 위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을 양식하다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적발일로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을 제한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

4. 사업자 선정 평가·가점 항목 및 우선순위

□ 평가항목

- 수산보조사업의 수혜 여부, 어업기반, 판매실적, 어업경영실적(출하신고내역, 사료구입영수증, 세무신고내역 등)

□ 가점항목

-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록 어가
- 수산관련 교육과정 이수자(군산대학교, 농식품인력개발원)

□ 우선순위(경합 시)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안전한 양식장으로 인증한 양식장
- '24. 1. 1. 이후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 어가
(NDMS 시스템 상 '확인관 확정' 및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어가
- 당해연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어가
- 전년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어가

5. 사업자 선정 및 집행절차

- 사업 신청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군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사업자 선정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한도액 설정 및 사업 완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내년도 사업추진 시 반영할 계획

6. 신청서 접수기간 : 2024. 1. 16.(화) ~ 2024. 1. 31.(수) (16일간)

7.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및 회의록(어촌계 또는 법인 신청 시에 한함) 1부
- 최근 2년간(2022~2023) 어업경영실적을 입증할 증빙자료
 - 출하신고내역, 사료구입영수증, 양식물 구입 및 판매실적(세무신고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및 업체 거래증빙 통장내역 등)
- 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1부 (해당시)

8. 접수처 : 고창군 해양수산물 수산진흥담당(☎ 063.560.2643)

9. 본사업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해양수산물 수산진흥 담당에 문의하시고,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24. 1. .

고 창 군 수

○ 개인정보제공 동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1.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1항(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제공 동의
- 2. 사용목적 : 2024년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 추진 목적으로만 제공
- 3. 정보 제공 범위 : 사업추진에 이용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필요한 정보
- 4. 정보 열람 범위 : 본인, 업무 관련자
- 5. 정보 등록 주체 : 본인, 업무 관련자
- 6. 정보주체의 권리 : 사업 추진시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제공동의를 한 경우에만 수집되므로 동의 없이 제공된 경우에는 삭제 요청할 수 있다.
- 7. 보유 및 사용기간 : 개인정보제공 동의한 날로부터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기간까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 추진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개인 정보 취급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1항(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을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고창군 공고 제 2024 - 100 호

2024년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내수면 양식어가의 시설현대화 및 확충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양식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2024년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현황

구분	사업량	총사업비			
		계	도비	군비	자담
내수면	양식시설 개·보수	20,000	3,600	8,400	8,000

【 세부 지원내용 】

: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내수면 양식시설의 개·보수 지원(수조, 침전조, 하우스시설, 노지시설 등)

【 보조금 지원한도 】

: 개소당 50,000천원 이내

2. 근거법령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보조 등)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8조(양식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소득증대 등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수산관계법령에 의해 면허·허가·신고를 필한 어업인 및 단체(영어조합법인 등) 이면서 양식 어장을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자

□ 제외대상

- MG 등 사용금지 물질을 위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을 양식하다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적발일로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을 제한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

4.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우선순위

□ 평가항목

- 수산보조사업의 수혜 여부, 어업기반, 판매실적, 어업경영실적(출하신고내역, 사료구입영수증, 세무신고내역 등)

□ 가점항목

-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록 어가
- 수산관련 교육과정 이수자(군산대학교, 농식품인력개발원)
- 정기적인 양식으로 질병 예방을 위해 사전 소독 등이 필요한 양식장
- 양식장이 연접하여 질병발생 시 인근 양식장에 피해를 확산할 수 있는 집단 시설지구

□ 우선순위(경합 시)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안전한 양식장으로 인증한 양식장
- '24. 1. 1. 이후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 어가
(NDMS 시스템 상 '확인관 확정' 및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어가
- 당해연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어가
- 전년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어가

5. 사업자 선정 및 집행절차

- 사업 신청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군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사업자 선정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한도액 설정 및 사업 완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내년도 사업추진 시 반영할 계획

6. 신청서 접수기간 : 2024. 1. 16.(화) ~ 2024. 1. 31.(수) (16일간)

7.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및 회의록(어촌계 또는 법인 신청 시에 한함) 1부
- 최근 2년간(2022~2023) 어업경영실적을 입증할 증빙자료
 - 출하신고내역, 사료구입영수증, 양식물 구입 및 판매실적(세무신고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및 업체 거래증빙 통장내역 등)
- 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1부 (해당시)

8. 접수처 : 고창군 해양수산물 수산진흥담당(☎ 063.560.2643)

9. 본사업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해양수산물 수산진흥 담당에 문의하시고,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24. 1. .

고 창 군 수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사업 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제2024-		
단체현황	사업자 (단체)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핸드폰)		
사 업 명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고창군청 관련부서	해양수산과
사업계획 개 요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60%)
		자부담	천원(40%)
<p>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1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자 (직인)</p> <p>고창군수 귀하</p>			

○ 개인정보제공 동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1.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1항(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제공 동의
 - 2. 사용목적 : 2024년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추진 목적으로만 제공
 - 3. 정보 제공 범위 : 사업추진에 이용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필요한 정보
 - 4. 정보 열람 범위 : 본인, 업무 관련자
 - 5. 정보 등록 주체 : 본인, 업무 관련자
 - 6. 정보주체의 권리 : 사업 추진시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제공동의를 한 경우에만 수집되므로 동의 없이 제공된 경우에는 삭제 요청할 수 있다.
 - 7. 보유 및 사용기간 : 개인정보제공 동의한 날로부터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기간까지
- 본인의 개인정보를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추진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개인 정보 취급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1항(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을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고창군 공고 제2024 - 113호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을 공고하오니,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19일

고 창 군 수

1.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74	8	국지 도로	661	광장10호 월곡리254-2	월곡리117-2	일반 도로	공설운동장	고창고19 (15.03.13.)	
변경	소로	1	174	10	국지 도로	658	광장10호 월곡리253	월곡리117-2	일반 도로	공설운동장		

-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174	소로1-1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B=8m → 10m - L=661m → 658m 	○ 실시설계를 반영하여 도로선형 변경

○ 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7	노외주차장	공음면 칠암리 604-20	4,324	감) 558	3,766	전북고-40 (15.03.13.)	
폐지	32	노외주차장	홍덕면 홍덕리 162-2 일원	3,142	감) 3,142		전북고-40 (15.03.13.)	
폐지	36	노외주차장	고창읍 읍내리 374-2 일원	1,290	감) 1,290		고창고-152 (17.11.17.)	

○ 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7	주차장	• 변경 4,324㎡→3,766㎡ 감)558	• 개설된 현황에 맞게 주차장 변경
32	주차장	• 시설폐지	• 개설계획이 없어 금회 주차장 폐지
36	주차장	• 시설폐지	• 개설계획이 없어 금회 주차장 폐지

○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공공지	아산면 운곡리 산103-4번지 일원	-	증) 15,131	15,131		

○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15,131㎡	• 운곡람사르습지 보호하는 완충역할 및 생태계보존이 필요함에 공공공지 신설

2. 열람기간 : 2024. 01. 19. ~ 02. 02.(공휴일 포함 14일간)

3.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6)

4. 기타 : 열람내용 및 관계 서류를 고창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합니다.

공고 제 2024-122호

2024년 수산부산물 처리지원 시범사업 모집 공고

2024년도 수산부산물 처리지원 시범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자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6일

고 창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명 : 수산부산물 처리지원 시범사업
- 사업비 : 180,000천원(도비 144,000천원 자담 36,000천원)
- 사업대상 : 바지락 가공업체 등
- 사업내용 : 바지락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껍데기를 탄화하기 위한 폐각처리기(탄화기) 지원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01. 16. ~ 2024. 01. 31.(16일간)

3. 사업 대상자

-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어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신청서류 및 선정절차

- 가. 사업신청서 1부
- 나. 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1부
- 다. 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증명원 각 1부 등
- 라. 법인 및 어촌계(이사회) 경우, 총회 회의록(어촌계나 기타 법인의 경우) 1부

▶ 세부심사기준 ◀

- ① 해양수산 보조사업(시설물 또는 장비지원) 수혜 여부
- ② 운영기반 확보(신청자 소유) 및 자부담 확보 여부
- ③ 신청자 유형
- ④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연도내에 설치 가능)
- ⑤ 해양수산(유통·가공 포함)·식품(위생 포함) 관련 교육이수 실적
 - * 동점자 발생 시에는 매출액*(2023년)이 높은 자 지원
 - ※ 부부 등 가족 구성원이 별도로 신청하더라도 1대만 신청 가능
 - ※ 영어조합법인 등 어업인 조직에서 신청하는 경우 조직 구성원은 별도로 신청할 수 없음
 - ※ 지원 제외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접수기간 종료 후 조회 예정)

4. 신청시 구비서류 : 아래 첨부(확인)서류 목록 확인 요망

5. 접수처 :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6. 기타 참고사항

- 가. 추가 발생하는 사업비 및 각종 신고 비용은 자부담
- 나. 대상자 확정(통보) 후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사업추진
-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등 규정
준수 및 보조금 통장 별도 개설·관리
- 라. 사업완료 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완료확인서 제출

7. 궁금하신 사항은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560-273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시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 타

-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위반 행위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근거하여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 시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560-2733)에 문의 바라며,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신 청 서 (제15조 관련)

신 청 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허가·신고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도 비 (80%)	자부담 (20%)
사업내용별 규모 (량)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거 1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보조사업 이력서				

보조사업 이력서 (제15조 관련)

1. 신청자 인적사항 (2023년 1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 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 원)	⑩ 정부보조금 (천 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고창군 공고 제2024 - 125호

2024년 진암 장학재단 장학생 추천 공고

2024년 제28기 진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장학생 추천 및 선발계획을 고창군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1. 공고 내용 : 2024년 진암 장학재단 장학생 추천 공고
- 2. 추천인원 : 5명
- 3. 자격기준
 - 가. 대학교(대학 포함) 재학 중인 자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직전학기 총 평점 3.5/4.5(3.3/4.3)이상인 자
 - 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학비 보조가 필요한 자
- 4. 장학금 지급액 : 1인 2,000천원(상반기 1회)
- 5. 신청 및 접수기간 : 2024. 1. 17. ~ 1. 31.
 - 접수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붙임 진암 장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계획 1부(서식포함)

2024년 1월 17일

고창군수

- 2024년 『진암』 장학재단 - 장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계획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을 지원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재로 양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현 황

- 재 단 명 : 『진암』 장학재단
- 장 학 생 : 5명
- 지급내용 : 장학금 10,000천원
 - ▶ 연1회 지급(상반기) / 1인당 2,000천원

□ 장학생 추천 및 지급계획

- 추천대상 : 5명
 - ▶ 대학교(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자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나,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추천방법 : 신청 · 접수(읍 · 면사무소) → 선정(군)
- 장학생 추천 및 지급계획
 - ▶ 신청 · 접수 2024. 1. 17. ~ 1. 31.
 - * 우편 도착분 : 1. 26.도착분에 한함
 - ▶ 선발 심사 및 선정 2024. 2. 1. ~ 2. 6.
 - ▶ 선발대상자 선정 통보 2024. 2. 7.
 - 통보기관 : 진암 장학재단
 - ▶ 장학증서 수여식 2024. 2월중
 - * 수여식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장학생 선발 자격기준

- 선발대상
 - 고창군에 거주하는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나,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자격요건 : 대학교(대학 포함) 재학생
 - 직전학기 총 평점 3.5/4.5(3.3/4.3) 이상인 자
- 제외대상
 -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수혜를 받거나 이와 유사한 학비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받는 자(국가장학금 제외)
 - 학기별 성적이 자격요건에 미달된 자
 - 품행이 불량하여 주위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 진암 장학재단 장학생
 - 졸업예정자
- 선발 심사방법 : 우선순위에 의한 선정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다문화 가정 우선

□ 제출서류

<신청 및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1통
- ② 추천서 1통
- ③ 재학증명서 1통
- ④ 성적증명서 1통
- 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부, 모) 각 1통
 - 2023.1.1.~12.31.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 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 모) 각 1통

<추천서식> -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는 자에 한함

학교명(○○○ 대학교(대학))

학과	학년 (주1)	성명	성별	생년월일	평균점수 (주2)	등록금 총액

주1) 매년초 진급하는 학년

주2) 직전 학기 총 평점 평균점으로 작성

지 원 신 청 서

	성 명	(한 글)		(한 자)		(사 진)	
	주민등록 번호						
	학 교 명	대학 전공		학부·과 학년			
	현 주 소						
지 원 자	연 락 처	(집/사무실)		(핸드폰)			
		(이메일)					
휴학학기	학년도	학기	휴학사유				
	학년도	학기	휴학사유				
학비출처	부모() / 본인() / 대출() / 장학금() / 기타()					종교	
장 학 금 수혜내역	장학금		학년도	학기	원 수혜		
	장학금		학년도	학기	원 수혜		
가 족 사 황	본인과의 관계	성명	연령	학력	종교	직업(직장 및 직위)	
	주거상황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위와같이 진암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진암 장학재단		2023년	월	일	이름	(인)	

추천서						
성명	한글				성별	
	한자				주민등록번호	
학과			학년		학번	
현주소						
성적	평점	/4.5	/4.3	/4.0	환산점수	/100
지도교수의 추천 소견						
<p style="text-align: center;">위 학생을 귀 재단의 지원 대상 학생으로 추천합니다.</p> <p>진암 장학재단 2023년 월 일 지도교수 (인)</p>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진암장학재단(이하 “재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 및 장학생 선발 관련 업무처리
- 장학생 선발 후 학사관리 및 졸업생 관리 등 일반 관리
 - 장학금 이중수혜 여부 확인
 - 장학생이 속한 교육기관에 성명, 학과, 학년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장학생 선발 통보 및 재학, 휴학 여부 등의 학사관리에 이용
 - 재단의 행사, 교육 참여 안내 및 소식 전달을 위한 자료의 활용

재단이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증명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지,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 학력사항(재학기간, 학교, 전공 등)
- 가족사항(가족관계, 성명, 연령, 학력, 직업, 근무처, 직위, 거주지 등)
- 기타 경제적 여건, 자격사항 등 장학생 선발 지원서에 입력된 모든 정보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장학생 선발자의 정보
 - 보유기간: 영구 보유
 - 보유목적: 졸업 후 장학생 동문 활동 및 유지
 - 장학생 탈락자의 정보
 - 보유기간: 장학생 선발 종료 후 1년
 - 보유목적: 추가 합격 및 향후 장학생 선발 가능 지원의 관리 등
- ※ 장학생 지원자가 개인정보의 삭제를 원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단이 장학생 선발 업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 의하여 위의 개인정보에 대한 각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재단이 본인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상기 1. 기재 목적으로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에(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작성자:

(인/서명)

고창군 공고 제 2024-159호

2024년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모집 공고

연근해어선에 대한 전기, 구멍, 통신, 소방 등 어선설비 지원을 통해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 등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24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나. 근거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및 제17조 (선진화사업에 대한 지원)
- 「수산업법 제86조 (보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보조대상사업) 제9호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지원 사업)
- 어선안전조업법 제26조(재정지원) 어선의 사고 및 예방을 위한 예산지원

다.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조기집행 시 기간단축)

라. 사업비 : 8,433천원

마. 사업량

(단위 : 대, 원)

구분	사업량	계	국비(30%)	도비(30%)	자담(40%)
기관·전기·구멍·소방 등	6개	8,433,000	2,530	2,530	3,373

※ 사업자 신청에 따라 사업량 변동 가능

바. 사업내용

-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구멍·항해 등 안전장비 지원

2.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 어선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어선설비(기관·전기·구멍·소방 및 항해 등 장비)의 구매(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

3. 지원품목

가.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 GPS연동

나. 자동소화시스템

* 2종 자동소화장비(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보급, 다만 어업인 희망에 따라 1종 장비(무인 기관실 CCTV 및 조타실 모니터, 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설치 가능

다. 구명조끼(어선용 구명의 포함) : 적당 최대 승선인원 수 만큼 지원 가능

라.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 GPS연동

마. 어선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그 밖의 어선설비

* 전기(축전지, 역전류 방지장치, 각종 계기류 등), 구명(구명부환, 사다리 등), 소방(고장·이동·휴대·투척식 등 소화기 등), 항해(레이다반사기, 항해용레이다, 위성항법장치, 기적 등), 무선설비

4. 우선순위 및 제외 대상

가. 우선순위

[기관 · 전기 · 구명 · 소방 · 항해 등 장비 사업 사업자선정]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는 허가어업 어선→면허어업 등 어선 순, 동일 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어업인 우선으로 하되,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톤수가 작은 어업인 순으로 함

나. 지원제외 대상

- 1)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2)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3)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자 및 그 밖의 지원이 부적정 하다고 판단되는 자(감척대상 어선, 부부 등 가족 교차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는 경우 등)

5. 사업자 선정 및 집행 절차

- 가. 사업 신청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 선정
- 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심의 기구에 상정·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당해년도 사업에만 적용)
- 다. 사업자 선정 완료 후 사업자 명단, 지원금액 등 공동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역 수협 조합장에게 통보
- 라. 사업자는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를 해당 지역별 수협 조합장에게 신청하여 해당 어선에 설치
- ※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 체결 제품 구입을 원칙으로 하나, 어업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별도 구매계약 체결 가능
- ※ 1척당 2개 품목까지 지원하되, 구명조끼(구명역) 미비치시 구명조끼(구명역)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다음해 지원할 경우 과거 지원품목의 2개 추가 지원 가능

6. 신청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4. 1. 22. ~ 2024. 2.28.
- 나.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 다. 접 수 처 :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7. 기타사항

- 가. 지원품목·단가는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홈페이지에 등록된 품목과 금액내에서 지원(모든 설비는 설치비를 포함)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560-2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

고 창 군 수

【공통 제1호서식】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체 등의 명칭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주소					
	종사경력	년				
신청내용	사업명					
	어선명 (어선번호)	신청사업과 관련된 허가 및 면허				
		종류	허가·면허 번호 (허가기관)			
사업비 (천원)	계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사업내용별 규모 (량)						
<p>「해양수산물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p>						

- (주) 1) 사업계획서는 세부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 2)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세부사업계획에서 서식을 따로 정하여야 함

【공통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고창군 공고 제2024 - 170호

코리아둘레길(서해랑길) 쉼터 및 지역관광자원연계 프로그램 운영 공모 사업 공고

코리아둘레길(서해랑길 고창구간) 개통에 따라 고창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걷기 여행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과 관광객이 공유하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코리아둘레길(서해랑길) 쉼터 및 지역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월 일

고 창 군 수

1. 공모분야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기간	접수·문의처
코리아둘레길(서해랑길) 쉼터 및 지역관광자원연계 프로그램 운영	134백만원	2024. 3.~ 2024 12.	관광산업과 (063-560-2949)

가. 사업기간: 2024. 3. ~ 2024. 12. ※ 예산범위 내 운영

사업장소 : 서해랑길(41코스 ~ 43코스) 일원

나. 공모내용

- 코리아둘레길(서해랑길) 고창구간 개통과 더불어 걷기 여행 활성화를 위한 고창구간(41코스~43코스)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의 매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서해랑 쉼터 조성 운영을 통한 쉼터 이용 활성화, 서해랑길 고창구간 걷기 여행 상품 운영
- 고창의 관광명소와 연계한 체류형 여행 투어 코스 개발 및 운영
- 서해랑길 구간 내 매력적인 체험형 관광 상품을 발굴 및 운영
- 서해랑길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서해랑길에 방문하는 방문객 및 탐방객의 재미뿐만 아니라 미션수행을 통해 의미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나리오 제시
-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어 홍보 및 참가자 모집
- 투어코스가 관광명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추진

※ 사업자 선정 후 한국관광공사 컨설팅 후 사업 추진(필수사항)

2.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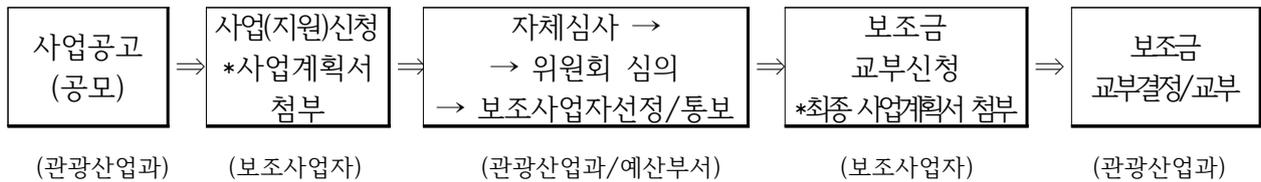
- 가. 공고일 기준 관광진흥법에 의거 고창군 내 여행업(국내, 국내외, 종합)으로 등록된 관광사업체
- 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3. 사업자 선정 절차 및 신청 안내

가. 공모기간 및 접수

- 공모 및 접수기간: 2024. 1. 24.(수) ~ 2024. 1. 29.(월) 18:00까지
- 공모방법: 방문접수(접수처: 고창군 관광산업과)
 - 주소 및 연락처: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063-560-2949)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보증보험증 사본
-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나 기재 사항이 없는 경우 심사 시 제외될 수 있음
 - 방문 접수는 평일(9:00~18:00)에만 가능.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나. 공모절차



다. 지원방식: 사업기간 내 분할교부 가능(교부금액 협의에 의해 시기 조정)

라. 심사 및 선정통보

- 자체 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정(1차) : 2024. 2월중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결정(2차) : 2024. 2월중
- 결과 발표 : 2024. 2월중 예정, 개별통지

4. 평가 세부사항

가. 심사기준

- 고창군 자체심사위원회 구성: 고창군 내부위원 5인 이내
 - 개최일시 및 장소 : 2024. 2월 중(별도 안내)
- 심사기준 : 정량적평가(30), 정성적평가(70)

- 사업신청자의 사업제안서 설명(5분), 질의응답(5분)
- 심사위원별 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의하여 심사,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 산술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1개 단체 지원 시 70점 이상일 경우 최종 선정하며, 2개 단체 이상 지원시 고득점 순으로 최종선정

○ 심사기준 세부평가항목

구분	심사기준	세부평가항목	배점		점수
정량적 평가	수행 역량	○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30	15	배점 기준 (별도표시)
		○ 사업 참여인력 인원현황		10	
		○ 경영상태 평가 - 제안사의 재무 건전성 평가(신용평가등급)		5	
정성적 평가	사업의 타당성	○산정업체 연혁, 조직 협력네트워크 보유현황 특징점 등 기술 ○ 사업의 적합성(사업목적이 관광사업 향상에 기여도) ○ 기획의 우수성(프로그램 운영기획, 구현 우수성) ○ 운영의 전문성(사업관리 및 현장운영 계획 정확도)	40	우수	30~40
				보통	20~29
				미흡	0~19
	예산의 적정성	○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따른 예산 산출내역	15	우수	10~15
				보통	5~9
				미흡	0~4
	지역사회 기여도	○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15	우수	10~15
				보통	5~9
				미흡	0~4
합 계			100		

나. 정량적 평가의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배점)	등급별	배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 최근 5년간 실적 누계 · 단일건 기준 체험/관광 유사 프로그램 운영 수행 실적 5,000,000원 이상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이하	15 13 10 8 6
사업 참여인력 인원 현황 (10)	· 참여인력의 인원현황	하단 표 참고	하단 표 참고
경영상태 (5)	· 제안사의 재무 건전성	하단 표 참고	하단 표 참고

※ 유사사업 사업실적서 제출

▶ 사업 참여인력 인원현황(10점)

- 제안업체의 사업 참여인력 인원현황 평가(10점)

구분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이하
배점	10	9	8	7	6

※ 사업참여 인력 명단 제출(기획, 홍보, 공연참여 등 역할구분 표시)

▶ 경영상태(5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회사채	평가등급		평점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O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O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신용평가 지정기관(나이스디앤비, NICE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어야 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한다.

【붙임1】 사업신청서

단 체 소 개 서

단체명	한글		
대표자명	한글	실무책임자	
사무실소재지	(우편번호) -		
연락처	전화		E-mail주소
	홈페이지		F A X (겸용)
상근직원수	명		
<p>주요 사업, 주요 연혁, 자산과 부채, 연간매출액 등</p>			

【붙임3】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2024년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지자체명)

√ 전체 분량 : 표지 및 붙임 제외 10 페이지 내외로 작성 * 참고자료 별도첨부 가능하나 최대 20페이지 내외로 제한
 √ 추가로 작성할 내용이 있으면 작성을 일부 변경하여 작성 가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사업목적
- 공간범위
- 사업예산
- 추진방향

-

나. 추진경과 및 기존 운영실적 (해당 있는 경우)

○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추진 관련 기존 운영실적, 성과 등 작성

○

-

2. 지역현황

가. 코스현황

○ 지역의 코리아둘레길 인근 자원 현황,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관 특징 등

○

나. 지역여건

○ 코리아둘레길과 연계 가능한 지역 관광자원,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

○

○

3. 쉼터 현황 및 운영 방안

가. 쉼터 위치 및 기능

○

나. 쉼터 운영 방안

○

<표 1> 쉼터시설 및 운영 개요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위치(기존시설명)		면적	
주소		시설소유	
운영방법(운영주체)		연락처	
운영인력		운영시간	
제공서비스			
지원사항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사항		

4.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마케팅 방안

가.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운영 코스, 운영횟수(시간계획), 해당 프로그램 특징(수요자 관점), 타 지역과의 차별성 등을 자유롭게 간략하게 작성(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

-

<표 2> 프로그램 운영 개요

N	프로그램명	내용	운영방법(운영주체)
1	프로그램1	(유형, 특징)	
2	프로그램2		
3	프로그램3		

나.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 대상지(단체) 모집 선정 및 설명회 일정 등 시간계획
- 센터 운영 및 지역 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

<표 3> 000 프로그램 운영 계획

구분	내용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내용
운영구간	코스(구간)
운영기간	00.00.00 ~ 00.00.00 (제외 기간)
운영규모	회당 00명, 연간 00회 운영
소요시간	프로그램 소요시간
운영방법	사전예약, 예약방법 등
참가비용	인당 1만원(식사 제공, 기념품 제공 등)
문의처	예약사이트, 연락처 등

다. 홍보마케팅 계획

- 센터 및 프로그램 홍보 마케팅 계획, 참가자 기념품 등

○

라. 안전관리 계획 ○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안전대책

○

-

5. 노선 관리 방안 (필요시)

○ 코리아둘레길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행안전성 확보 방안 (시설 보수, 풀베기, 모니터링 등)

○

-

6. 예산계획 및 사업추진일정

가. 지방비 확보계획 ○ 확보시기, 기 확보액, 미확보의 경우 향후 확보방안 등 작성

○

-

나. 예산집행 계획

구분	집행내역	소요예산 (천원)	비고
	총계		
	소계		
경상보조			

다. 사업 추진일정

○

-

○

-

7. 기대효과 및 향후 관리계획

가. 기대효과

○ 해당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경제나 지역관광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

나. 향후 관리운영계획

예산지원 종료 이후 사업 지속화 방안 등 설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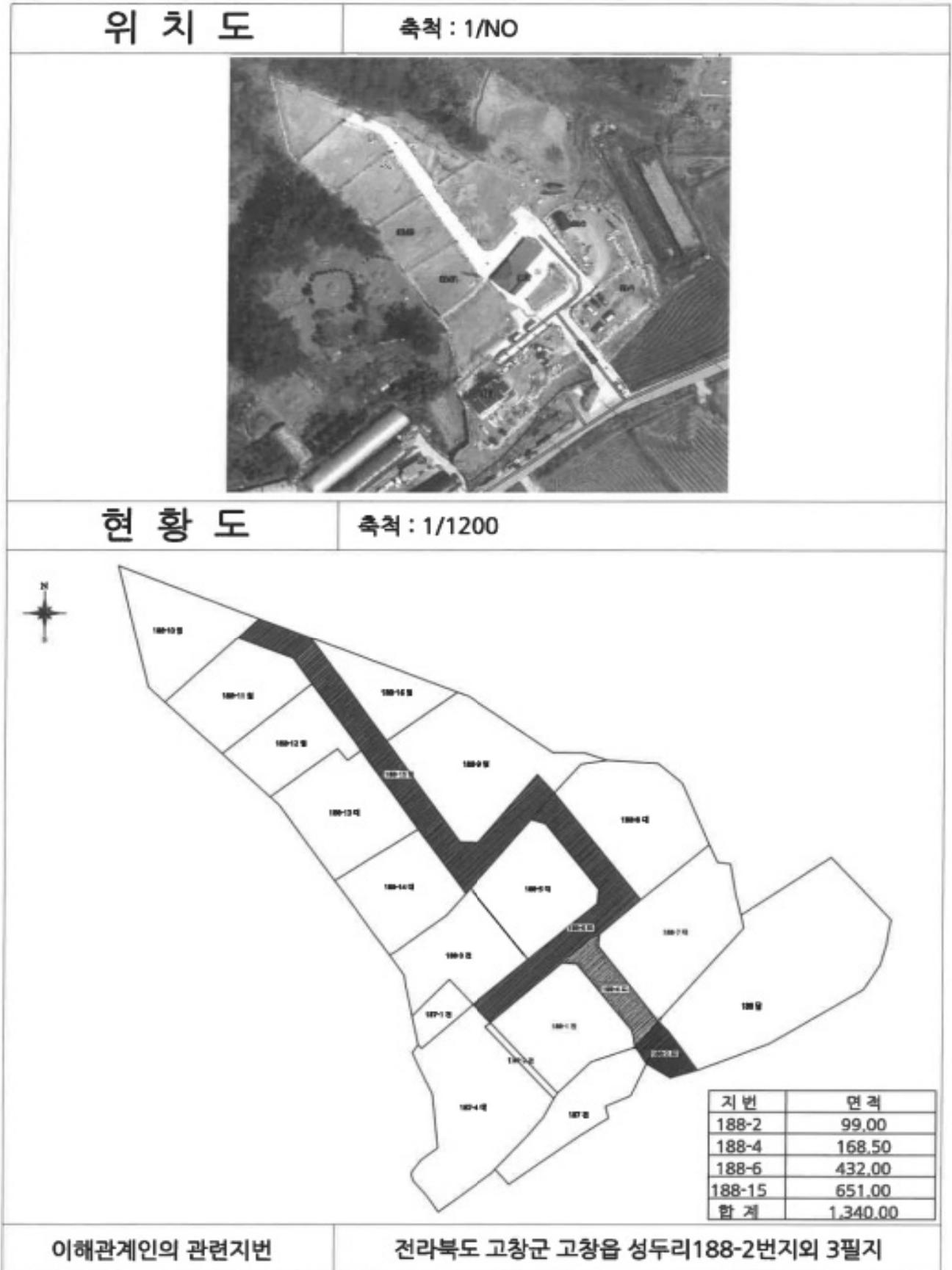
<업무담당자 정보>

구분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 폰
광역					
기초					
민간					

[별지 제27호서식]

(2면중 제1면)

도 로 대 장				지정번호 □□□□-□□□□	
대 지 위 치	고창군 고창읍 성두리			지 번	188-11
건 축 주	김기태	주민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박희경				
도 로 길 이	223.33m	도 로 너 비	6m	도 로 면 적	1,340㎡
이해관계인 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 련 지 번	동의면적(㎡)	동 의 일 자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188-2	99.00	2024.01	이혜자		(인)
188-4	168.50	2024.01	이혜자		(인)
188-6	432.00	2024.01	이혜자		(인)
188-15	650.00	2024.01	이혜자		(인)
		2024.01	정창		(인)
작성 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 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치 도

(2면 중 제2면)



현 황 도

축척 : 1 / 2000

위치 : 경북 고령군 고수면 장두리 585-15번지 외2필지



법 레

건축계획부지	
도시계획부지	
지 적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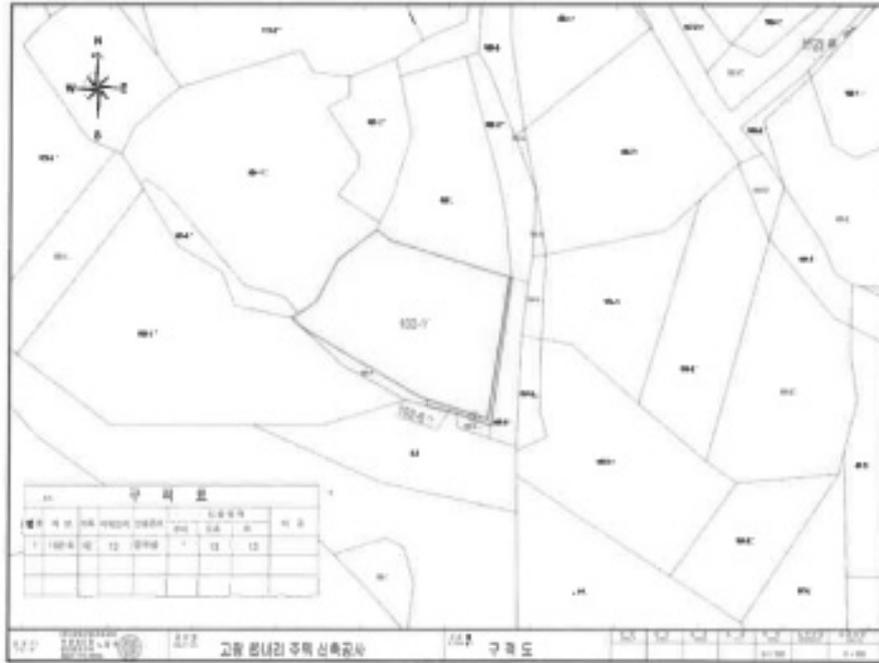
지 번	지 역	구 격 표	면적(㎡)	비 고
585-15	전	9.25%	1,164	
585-10	전	3.72%	95	
547-1	밭	3.85%	4	
계		10.00%	1,263	

이해관계인의 관련지번

(2 중 제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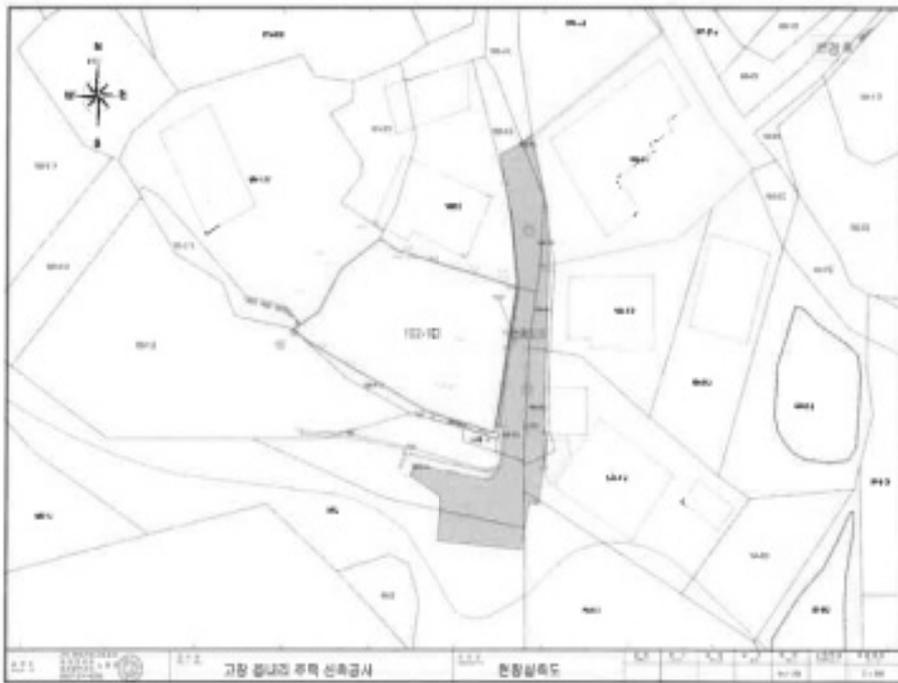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현황도

축척 [] 1/600, [] 1/1,200

(2면 중 제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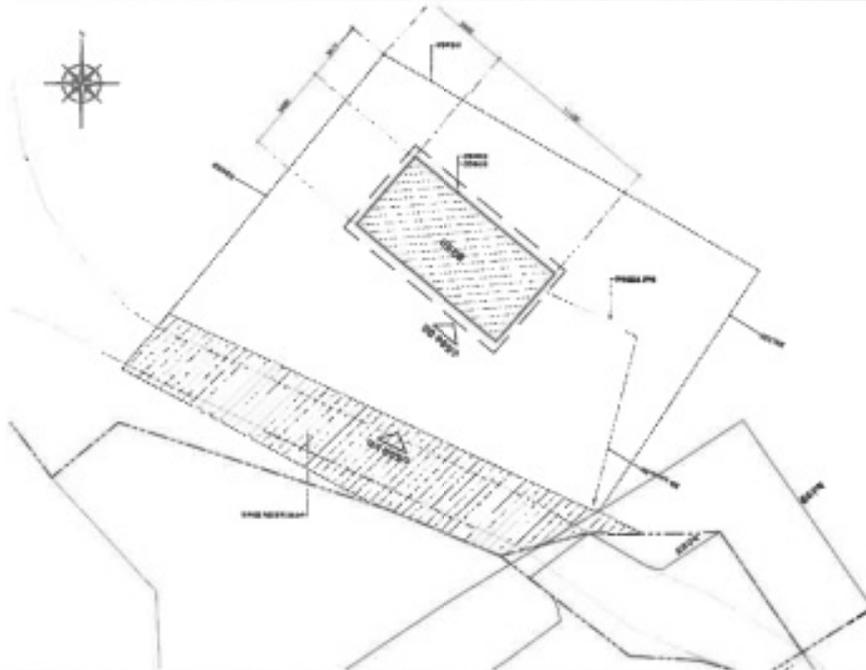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현황도

축척 [] 1/600, [] 1/1,200